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32권 제1호(통권 제125호, 2021・봄)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조성용**

**국 | 문 | 요 | 약**

『디엔에이법』 시행 후 10년이 지난 지금, 동법이 추구하는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목적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유의미할 정도로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우선 통상적으로 사건해결 능력과 범죄수사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평가기준에 의하면, DNA DB 운영을 통해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은 약 13.8%이다. 이러한 수치는 외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DNA DB가 실제로 범죄수사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으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자 DNA DB가 재범자를 정확하게 포함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평가기준에 의하면, 자신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범죄자 DNA DB에 수록되어 있는 범죄자 중에서 여죄가 있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약 7.4%이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 DNA DB의 수록건수가 인구대비 0.4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다고는 볼 수 없으나 다른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른 한편 『디엔에이법』이 추구하는 국민의 권익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의 실체적 전제조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는 장래의 범죄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범죄혐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무죄추정 및 영장주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사회화 요청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약점을 보완해 줄 보호장치(safeguard)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이다. 다른 하나는 구속피의자등 또는 수형자등이 사망한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디엔에이법』 제13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1.3.31.1.123.

❖ 주제어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재범의 위험성, 무죄추정

---

* 이 논문은 2021년 단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Ⅰ. 서론

2010년 1월 25일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이라 함)이 동년 7월 26일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경과하였다. 동법은 제정되기 이전부터 15년간의 우여곡절을 겪고 탄생하였다.[1] 동법의 제정이 그토록 지지부진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다.

『디엔에이법』은 시행된 이후에도 민감한 개인의 생체정보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과도하게 수집하여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정보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도 『디엔에이법』이 시행된 이래 두 차례나 중요한 결정을 하였는데,[2] 비록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조항과 삭제조항을 위헌으로 보았으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한 『디엔에이법』 제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에 반하여 『디엔에이법』의 제정을 주도했던 법무부는 이 법으로 인하여 살인, 강간 등 흉악범의 조기 검거로 추가 피해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뛰어난 범인식별력 때문에 범인으로 하여금 추가 범행을 자제하게 하여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조기에 무고한 수사대상자를 배제할 수 있고, 기존 수형자들 중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강변하였다.[3] 이러한 주장은 곧바로 입법에 반영되었다. 그리하여 『디엔에이법』 제1조는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

1) 『디엔에이법』의 입법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신양균, 유전자정보은행제도와 인권, 형사법연구(제22권 제3호), (2010), 60면 이하; 김혜경, 유전자정보수집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형사법연구(제22권 제3호), (2010), 237면 이하.

2) 헌법재판소 2014.8.28. 선고 2011헌마28, 2011헌마106, 2011헌마156, 2011헌마326, 2013헌마215, 2013헌마360(병합) 결정(이하 '헌법재판소 2011헌마28 결정'이라 함)과 헌법재판소 2018.8.30. 선고 2016헌마344, 2017헌마630(병합) 결정(이하 '헌법재판소 2016헌마344 결정'이라 함) 참조.

3) 법무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09.5.27.일자.

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엔에이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입법목적이 과연 달성된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4]가 발간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보고서의 운영현황 통계자료와 선행 논문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토대로 바로 이 점을 확인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디엔에이법』의 변화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 글의 주된 작업인 『디엔에이법』 시행 10년에 대해 평가한 다음, 동법에 대한 입법론을 제언해 보기로 한다.

## Ⅱ. 『디엔에이법』의 변화와 그 내용

### 1. 제정 당시 『디엔에이법』의 주된 내용

『디엔에이법』은 특정범죄의 구속피의자등[5]이나 수형자등[6]으로부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래의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법은 우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수집규정(동법 제5조 내지 제9조), 수록규정(동법 제10조), 검색·회보규정(동법 제11조) 및 삭제규정(동법 제13조)를 두고 있다.

수집규정은 그 대상을 구속피의자등, 수형자등 및 범죄현장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로 구분하고 각각 상이한 요건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집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동법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4) 『디엔에이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동법 제14조).

5) 특정범죄로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를 말한다(『디엔에이법』 제5조 제1항).

6) 특정범죄로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 2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9호 또는 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자를 말한다(『디엔에이법』 제6조).

당하는 경우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또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수형자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친족의 신청에 의해 삭제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디엔에이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규정(동법 제12조) 및 처벌규정(동법 제15조 및 제17조)을 두고 있으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관리·운영을 담당할 기관(동법 제4조)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운영을 통제한 기관(동법 제14조)을 규정하고 있다.

## 2. 개정된 『디엔에이법』의 주된 내용

『디엔에이법』은 제정 이후 7차례[7]에 걸친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쳤다. 대체로 형법을 비롯한 타법의 개폐에 따른 후속조치이거나,[8] 처벌규정을 강화하거나,[9] 또는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디엔에이법』 제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10]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2016.1.6.자의 개정과 2020.1.21.자의 개정이다.

전자의 경우 기존의 11가지 유형의 특정범죄에 7가지 범죄유형을 추가함으로써 특정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형법 제2편의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29장(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6장(주거침입의 죄), 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 제42장(손괴의 죄)에 규정되어 있는 죄 중 주요한 범죄유형이 특정범죄의 목록에 추가되었다. 2016.1.6.자의 개정은 원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규정이 위헌결정으로 삭제되자 그에 따른 후속조치

7) 『디엔에이법』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4.1.7., 2014.10.15., 2016.1.6., 2020.1.21.

8)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4.10.15., 2016.1.6.

9) 종전 『디엔에이법』 제17조(벌칙) 제5항에 의하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와 추출한 디엔에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였으나, 개정 2014.1.7.자의 개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10) 개정 2020.1.21.

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기존의 『디엔에이법』 적용대상이었던 다수의 조항(『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이 위헌결정으로 삭제되자, 그 보완조치로서 형법상의 일정한 범죄유형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디엔에이법』 제8조에 대하여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거나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 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 또한 채취대상자는 채취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8조의 2). 나아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3항).

## Ⅲ. 『디엔에이법』시행 10년에 대한 평가

### 1. 『디엔에이법』의 목적 규명

#### (1) 『디엔에이법』의 목적의 구체화 필요성

『디엔에이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동법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1조는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범죄수사'와 '범죄예방'그리고'국민의 권익 보호'만을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동조에서 언급된 목적들 상호 간의 관계 및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범죄수사, 범죄예방 및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세 가지 목적의 상호 균형성을 도

모하면서도 범죄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보려는 입장,[11] 재범방지로서의 범죄예방으로 목적을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12] 장래의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주된 목적으로 보는 입장[13]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엔에이법』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다시 말해,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감식, 거기로부터 획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로의 수록, 검색 및 회보라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디엔에이법』의 목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법적 성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첫째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입장이다.[14]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법 부칙 규정의 소급적용을 검토하면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등을 대상으로 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보안처분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았다. 즉,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수록, 검색, 회보라는 일련의 행위는 수형자등에게 심리적 압박에서 나오는 위화효과로 인한 범죄의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11) 김혜경,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형사정책연구(제25권 제2호), (2014/여름), 8면 이하.

12) 윤영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제12권 제1호), (2011), 395면 이하.

13) 조성용,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법학(제49호), (2007), 993면; 이호중,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 민주법학(제51호), (2013), 227면.

14) 헌법재판소 2014.8.28. 2011헌마28·106·141·156·326, 2013헌마215·360(병합); 박동균/황영구,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제10권 제2호), (2008), 108면 이하; 이상용, 범죄수사목적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제15권 제3호), (2004/가을호), 148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범죄수사이면서 장래 범죄예방의 목적이 있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는 견해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결과 보고서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19), 40면.

다고 한다.

둘째는 경찰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이다.[15] 주된 논거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문정보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나 지문정보 모두 범인식별 등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그 점에서 전자의 증거가치가 후자의 그것보다 더 우월한 것도 아니다. 또한 지문채취의 경우 궁극적으로 피의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이 아니며,[16]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지문채취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지문을 채취할 수 있을 뿐이다.[17] 나아가 이렇게 수집한 피의자의 지문정보를 미래의 범죄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에 제공하는 경우에 별도의 영장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검색 등도 지문정보의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일종의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으로 보는 입장이다.[18] 『디엔에이법』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미래의 형사소추에 대비한 사전적 정보조달'(vorsorgliche Informationsbeschaffung)[19]의 성질을 지닌다고 한다. 왜냐하면 피의자 또는 수형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에 제공할 때에야 비로소 기존의 수사시스템으로는 불가능했던 용의자 없는 미제사건의 경우는 물론이고, 범인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확보되었으나 용의자가 없는

15) 이성기/한면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법과정책연구(제12집 제1호), (2012), 122면 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법원 검토의견, 이한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9/11, 14면.

16)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상 지문채취불응죄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본 규정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04.9.23. 2002헌가17·18(병합) 결정.

17) 수사상 지문 채취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문성도, 수사상 지문 채취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제13권 제4호), (2002), 225면 이하.

1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관련 헌법소원사건(2011헌마28 등)에 대한 의견제출, 2011.7. 14면; 조성훈, DNA신원확인정보와 영장주의, 정보법학(제17권 제2호), (2013), 191면; 이호중, 주13의 논문, 227면; 조성용, 주13의 논문, 987면 및 1006면.

19) Volk, Gesetz zur Ä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 - Anspruch und Wirklichkeit, NStZ 1999, S. 167.

경우에도 쉽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장래의 범인검거와 형사소추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일종의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이라는 것이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전제조건으로서 피의자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의 검색 및 회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의 목적에 한하여 허용하고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확장하지 않은 점등 형사소송법과의 관련성을 그 근거로 내세운다.

이하에서는 각 입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 입장은 수형자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소법원이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 이외에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보안처분의 속성상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전면에 나서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동법 제42조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동법 제56조)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디엔에이법』상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그 대상자가 수형자등뿐만 아니라 구속피의자등도 포함하며, 형을 선고한 당해 사건의 수소법원이 형벌 이외의 부가처분을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보안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특히 이 입장은 형을 아직 선고받지 아니한 구속피의자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법적 성격은 보안처분이 아니라 오히려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입장은 통상적으로 지문정보는 경찰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認識業務의 목적으로 채취, 보관 및 검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업무조치는 당면한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유무죄 증명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수사에서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문의 채취, 보관 및 검색으로 인한 기본권(예컨대 정보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매우 상이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비례성 원칙의 관점에서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우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지문정보와 달리 개인식별에 특화된 정보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인격관련적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비록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위(이른바 junk DNA)에서 나온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식별정보를 넘어 머리카락이나 눈의 색깔, 성별, 인종, 가족 및 혈족 등의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20]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신원확인의 목적을 넘어 다른 용도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지문에서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결과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21] 발견된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진범을 지목한다면 양자간에 차이는 없다. 그러나 혐의가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에게 향해져 있다면 그로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높은 증거가치로 인하여 그의 무죄에 대해 수사기관을 확신시키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 마치 거증책임의 전환처럼 작용한다. 나아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통상적인 지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22] 피의자나 수형자는 의식적으로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지문과는 달리 자신도 모르게 그의 체세포를 특정한 장소에 남길 수 있으며, 우연히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체세포가 범죄현장에서 발견되거나 심지어는 진짜 범인이 타인의 체세포를 범죄현장에 남겨놓을 수도 있다. 디엔에이감식의 오류 가능성도 지문감식의 그것에 비해 더 높다.

그 밖에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경찰행정작용의 일환인 인식업무조치로 보게 되면 『디엔에이법』의 특정범죄는 모든 범죄로 확대되고, 채취영장은 불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 판단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23] 이는 『디엔에이법』규정의

---

20) 김혜경, 주11의 논문, 28면.

21) Krehl/Kolz, Genetischer Fingerabdruck und Verfassung, StV 2004, S. 450.

22) 이은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법률제정 공청회), 법무부/행정안전부, (2009), 91면; 이상용, 주14의 논문, 149면 각주 50.

23) 일각에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법적 성격을 경찰행정작용이라고 보면서도 『디엔에이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법원의 영장을 요하고, 일정 범죄에 대해서만

전반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법의 입법취지와도 부합될 수 없다. 그리하여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통상적인 인식업무조치로 보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법적 성격은 일종의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전통적인 의미에서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예컨대 압수·수색·검증)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당면한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유무죄 증명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수사에서 범인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적 정보조달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으며, 당연히 미래의 범죄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미래의 범죄예방을 지향하는 경찰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진압적 형사소송법과 예방적 경찰법의 구분은 문제시되는 조치가 과거지향적인지 미래지향적인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24]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경찰법적 예방조치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경찰법적 예방조치는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비로소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검색에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의자나 수형자에게서 특정한 범죄를 범할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한편으로는 범죄예방,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형사소추에 대비한 사전적 정보조달의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2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이와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법적

---

채취를 허용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접근 및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성기/한면수, 주15의 논문, 123면.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디엔에이법』이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형사소송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법적 성격은 경찰행정작용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조치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4)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Schwan, Die Abgrenzung des Anwendungsbereichs der Regeln des Straf- und Ordnungswidrigkeitenverfolgungsrechts von dem des Rechts der Gefahrenabwehr, VerArch 70, (1979), S. 120.

25) 조성용, 주13의 논문, 993면. 독일에서는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조치를 이른바 '예방적 범죄투쟁'(vorbeugende Verbrechensbekämpfung)이라 부른다. 그 개념에 대해 자세히는 Wolter, vor §151. Rn. 153, in: SK-StPO, München, (2005).

성격을 범죄예방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미래의 형사소추에 대비한 사전적 정보조달로 보아야 할지 문제된다. 이때 과거지향적인 진압에 중점이 있는지 아니면 미래의 위험방지를 위한 예방에 중점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중점이론이 합당한 기준이 된다.[26] 거기에 따르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법적 성격은 미래의 형사소추에 대비한 사전적 정보조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디엔에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그 주된 목적이 미래의 위험방지보다는 미래의 범인검거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좀 더 자세히 논증해 보고자 한다. 우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예방적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첫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 및 대조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범죄방지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그러한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장차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피의자나 수형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로 하여금 범죄를 단념하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27]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위화효과는 장기적으로 잠재적 범죄자(일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범인이 신속하게 검거되었다면, 피의자 또는 수형자는 이로 인해 위화되거나 재사회화되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일반인도 이로 인해 위화되어 애당초 범죄를 단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한 예방효과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두 번째의 경우이다. 첫 번째의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저장, 검색 및 대조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를 사실상 방지한다는 의미에서의 예방은 실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련의 행위 자체가 즉각적으로 피의자나 수형자가 의도했거나 이미 저질렀던 범죄를 그만두게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경우는 단지 효율적인 형사소추(예컨대 신속한 범인검거)의 부산물로서 나오는 부수효과에 불과하다. 모든 형사소추 조치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예방효과를 수반한다. 그리하여 형사소추에서 나오는 이러한 부수적 예방효과는 오히려

26) 중점이론에 대해서는 박병옥/황문규, 위험예방을 위한 경찰법과 범죄진압을 위한 형사법의 목적·수단상 몇 가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제23권 제3호), (2012/가을호), 220면 각주 76.

27) 이승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이론과 국제 현황,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18호), (2009/2), 136면; 경찰청, 2011헌마 32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의견서, 2011.10.21. 78면 이하.

형사소추의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8] 두 번째의 경우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그 자체에서 나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위화효과[29]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효과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효과는 다분히 사색적, 심리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경험과학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며, 실제로 형사소추에서 나오는 부수적 예방효과를 능가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디엔에이법』 시행 후 1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수많은 성공적인 범인검거 실적이 외부에 보도되었다면, 그로 인한 부수적 예방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예방효과는 형사소추의 효과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에 따라 『디엔에이법』이 추구하는 범죄예방의 목적도 그만큼 그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에 반하여 『디엔에이법』이 추구하는 범죄수사의 목적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지니고 있다. 피의자와 수형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 및 대조에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형사소추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미제사건의 해결은 물론이고 범인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확보되었으나 용의자가 없는 경우에도 쉽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도 여죄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범인으로 검거하기 위한 것이지, 미래에 예상되는 그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속피의자등은 이미 구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애당초 그가 범죄를 범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그나마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범죄를 범할 여지가 거의 없는 구속피의자등을 『디엔에이법』의 적용 대상자로 삼은 것은 여죄 확인을 통한 범인검거라

28) 같은 취지로는 BVerwGE 47, 255, 265.

29) 이러한 위화효과가 그 조치의 직접 대상자인 피의자나 수형자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면 특별예방, 잠재적 범죄자(일반인)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면 일반예방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는 일반인의 범죄예방을 위한 일반예방의 효과라기보다는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할 특별예방효과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김혜경, 주1의 논문, 243면; 윤영철, 주12의 논문, 384면, 각주 10. 그러나 형사상의 조치는 그 수범자의 범주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때의 위화효과는 특별예방과 일반예방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는 이유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나아가 『디엔에이법』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를 형사소송의 목적에 한하여 허용하고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확장하지 않은 것도 범죄수사의 목적을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된다.

요컨대 디엔에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목적을 모두 추구하고 있으나, 주된 목적은 범죄예방이 아니라 범죄수사(효율적인 형사소추)이다. 따라서 그것의 법적 성격은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이 아니라 미래의 형사소추에 대비한 사전적 정보조달로 이해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넓은 의미에서의 형사소추 조치'[30]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3) 『디엔에이법』의 목적의 재구성

이제 지금까지 검토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디엔에이법』의 목적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동법 제1조가 열거한 범죄수사, 범죄예방 및 국민의 권익 보호는 각각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디엔에이법』의 목적이다. 그에 반해 일각에서는 국민의 권익 보호 목적은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에 의한 반사적 이익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권익 보호에 그치기 때문에 『디엔에이법』의 목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1] 즉, 강력범죄의 재범방지 또는 신속한 범죄수사로 인하여 국민 일반이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에서 추상적인 권익 보호이며, 범인이 조기에 검거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및 그와 관계된 자들의 인권이 간접적으로 보호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권익 보호라고 한다.

물론 『디엔에이법』의 적용 대상자는 구속피의자등과 수형자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목적을 이해한다면, 일반인은 동법이 적용됨으로써 반사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 권익을 보호받을 뿐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동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입법자가 동법의 제정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목적을 이해한

30) BVerfGE 103, 20f; BGH, StV 1999, S. 302. 영미법 국가에서도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의 일종인 압수·수색으로 파악한다. 자세히는 조성훈, 주18의 논문, 191면 이하; 신양균, 주1의 논문, 67면 각주 19.

31) 김혜경, 주11의 논문, 13면 이하; 윤영철, 주12의 논문, 385면.

다면 국민의 권익 보호 목적은 그 자체로 입법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디엔에이법』의 제정 배경을 돌이켜보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아시다시피 동법은 그동안 인권 침해를 이유로 사회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제정되지 못하다가 조두순 사건, 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강력범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이를 계기로 15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것이다. 그리하여 동법의 입법자는 한편으로는 『디엔에이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구속피의자등 및 수형자등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고, 다른 한편으로 강력범죄로부터 일반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법 제1조를 문리 해석할 때에도 '국민'의 의미를 반드시 구속피의자등과 수형자등으로 국한시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구속피의자등과 수형자등 이외에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여도 그것이 구속피의자등과 수형자등의 인권 침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근거가 없다.[32]

둘째, 동법 제1조가 열거한 범죄수사, 범죄예방 및 국민의 권익 보호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일각에서는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적용 대상자 및 대상범죄 등이 달라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동법의 입법목적과 적용 대상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순에 빠져있다고 한다.[33]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을 뿐이지, 각각의 목적에 따라 그 근거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범죄예방이 목적인 경우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범죄수사가 목적인 경우에는 경찰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34] 단지 『디엔에이법』은 범죄수사의 목적이 범죄예방의 목적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일 뿐이다.

셋째, 동법 제1조가 열거한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의 목적 중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압

32) 그에 반해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수인의무를 법률이 부과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김혜정, 주11의 논문, 14면.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동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 국민의 권익 보호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싶다.

33) 윤영철, 주12의 논문, 383면 이하 및 389면 이하.

34) 그에 반해 그러한 식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는 김혜정, 주1의 논문, 249면; 윤영철, 주12의 논문, 383면.

도적인 비중을 지니고 있다. 그에 반해 일각에서는 범죄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보려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35] 심지어는 범죄수사는 배제하고 오로지 범죄예방만을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36] 주장한다. 거기에 의하면 『디엔에이법』은 현재의 범죄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디엔에이감식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지향하므로, 범죄예방을 위한 일종의 '사전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점을 강조한다면 동법의 입법목적 역시 이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동법의 입법목적은 재범방지로서의 범죄예방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와 무관한 현재의 범죄수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범죄수사의 목적은 동법의 목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이 견해는 앞서 살펴보았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통상적인 인식업무조치로 보려는 시도와 일맥상통하다. 그리하여 현재의 범죄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디엔에이감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형사소송으로 보아 범죄수사의 목적이 허용되나, 미래의 범죄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의 경우에는 경찰행정작용의 일환인 인식업무조치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므로 범죄예방의 목적만 허용되고 범죄수사의 목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상세하게 논증한 바와 같이[37]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 2.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목적 달성 여부

### (1)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 평가와 그 기준

현재 운영 중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이하 'DNA DB'라 함)가 얼마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DNA DB의 효율성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DNA DB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면,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대한 기여도 또한 커지게 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데이터베이스

35) 김혜경, 주11의 논문, 8면~12면. 아마도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의식의 확충은 입법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란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디엔에이법』의 입법목적인 범죄예방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36) 윤영철, 주12의 논문, 395면 이하.

37) Ⅲ.1.(2). 참조.

의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다.[38)]

선행연구[39)]에 따르면 두 가지 척도를 제시한다. 하나는 통상적인 DNA DB의 효율성 평가로서, 범죄현장 등 DNA DB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건수에 대비하여 범죄현장 등 DNA DB에서 범죄자 DNA DB를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의 비율(일치율)이다. 이는 사건해결능력과 범죄수사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며, 일반적으로 DNA DB의 사이즈가 클수록 일치율은 높게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범죄자 DNA DB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건수에 대비하여 범죄현장 등 DNA DB에서 범죄자 DNA DB를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의 비율(일치율)이다. 이는 범죄자 DNA DB가 재범자를 정확하게 포함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그 이외에도 DNA DB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여죄확인의 효과이다. 이는 범죄자 DNA DB에서 범죄현장 등 DNA DB를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로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보고서의 운영현황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DNA DB의 효율성을 평가해 보도록 한다.

### (2) 사건해결능력

DNA DB가 얼마나 범죄수사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범죄현장등 DNA DB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건수와 범죄현장 등 DNA DB에서 범죄자 DNA DB를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를 확인하고 그 비율을 산정해 보아야 한다.

38) 최민영, 영국의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규제정책의 변화와 그 시사점, 형사정책(제25권 제2호), (2013), 324면.

39) 김택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성 강화를 위한 법정책, 비교형사법학회(제17권 제3호), (2015), 107면.

〈표 1〉 범죄현장 등 DNA DB에 수록된 신원확인정보 건수 현황[40)]

| 연도 | 2000~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수록건 수 | 26,035 | 8,560 | 9,452 | 10,190 | 10,310 | 9,205 | 9,005 | 10,069 | 11,668 | 11,032 | 12,549 |

<표 1>에서 보듯이, 범죄현장등 DNA DB에 수록된 신원확인정보는 법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26,035건을 포함하여, 총 128,075건이다.

〈표 2〉 범죄현장 등 DNA DB와 범죄자 DNA DB 일치 현황[41)]

| 연도 | 검색요청 | 범죄현장등 DNA DB → 수형인등 DNA DB | 범죄현장등 DNA DB → 구속피의자등 DNA DB |
|---|---|---|---|
| | | 일치(건) | 일치(건) |
| 2010~2011 | 15,828 | 1,196 | 673 |
| 2012 | 26,636 | 1,415 | 1,510 |
| 2013 | 16,722 | 877 | 652 |
| 2014 | 14,085 | 724 | 673 |
| 2015 | 13,614 | 760 | 764 |
| 2016 | 15,141 | 850 | 791 |
| 2017 | 17,184 | 1,070 | 1,005 |
| 2018 | 18,641 | 1,128 | 1,112 |
| 2019 | 18,215 | 1,194 | 1,158 |
| 재검색 | 74,822 | 110 | 0 |
| **합계** | **230,888** | **9,324** | **8,338** |

또한 <표 2>에서 보듯이, 2010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230,888건의 범죄현장 증거물을 검색 의뢰하여 9,324건의 수형인 등의 신원과 8,338건의 구속피의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범죄현장 증거물로부터 DNA DB 검색을 통해 수형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치율은 총 128,075건에 대한 9,324건으로

4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보고서, (2020/6), 17면.

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앞의 운영보고서, 20~21면.

7.3%이며, 구속피의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치율은 6.5%이다. 전체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치율은 약 13.8%이다. DNA DB 운영을 통해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약 13.8%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DNA DB가 실제로 범죄수사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으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수치는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은 인구대비 수록건수가 1~8.9% 수준이며 일치율도 35~58% 사이인 반면에,[42]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수록건수가 0.24%에 불과하며 일치율도 13.8%로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치율보다는 수사 재개 건수 통계가 DNA DB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더 합리적인 기준임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치 건이 해당 수사기관으로 통보가 되면 기해결 사건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게 되나, '특정한 경우'는 DNA DB 검색 일치 건이 모두 수사 재개의 통계로 산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43]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범죄현장 등 DMA DB와 수형인 등 DNA DB의 일치 후 수사 재개 건수는 2,276건, 구속피의자 등 DNA DB의 일치 후 수사 재개 건수는 3,713건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범죄현장 등 DNA DB에서 범죄자 DNA DB를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 대신에 수사 재개 건수를 대입하면, 수형인 등에 대한 수사 재개율은 1.8%, 구속피의자등에 대한 수사 재개율은 2.9%로 낮아진다. 전체 범죄자에 대한 수사 재개율은 약 4.7% 수준에 불과하다.

### (3) 재범자확인

범죄자 DNA DB가 재범자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범죄자 DNA DB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건수와 범죄현장 등 DNA DB에서 범죄자 DNA DB를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를 확인하고 그 비율을 산정해 보아야 한다.

---

42) DNA-Database Management Review and Recommendations ENFSI DNA Working Group, April 2014, 29면, 김택수, 주39의 논문, 106면 및 108면 재인용.

4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앞의 보고서, 22면. 이때 특정한 경우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일치자를 찾아 통보했지만 다른 수사 단서에 의해 일치 통보 전에 동일인이 피의자로 검거된 경우와 복수의 일치 건이 동일 사건에서 비롯된 경우를 말한다.

〈표 3〉 범죄자 DNA DB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현황[44)]

| 연도 | 수형인등 DB | 구속피의자등 DB | 범죄자(합계) |
|---|---|---|---|
| 2010 | 10,185 | 4,729 | 14,914 |
| 2011 | 21,431 | 9,939 | 31,370 |
| 2012 | 16,367 | 8,485 | 24,852 |
| 2013 | 17,734 | 7,822 | 25,556 |
| 2014 | 18,254 | 6,988 | 25,242 |
| 2015 | 15,583 | 6,966 | 22,549 |
| 2016 | 18,784 | 6,331 | 25,115 |
| 2017 | 19,181 | 5,450 | 24,631 |
| 2018 | 18,883 | 4,917 | 23,800 |
| 2019 | 16,478 | 4,870 | 21,348 |
| **합계** | **172,880** | **66,497** | **239,377** |

<표 3>에서 보듯이, 수형인등 DNA DB에는 총 172,880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구속피의자등 DNA DB에는 총 66,497명이 수록되어 있다. 수형인등 DNA DB에 수록된 자의 수가 구속피의자등 DNA DB에 수록된 자의 2배를 넘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는 구조적인 이유에서[45)]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표 2>에서 살펴보았듯이, 2010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230,888건의 범죄현장 증거물을 검색 의뢰하여 9,324건의 수형인등의 신원과 8,338건의 구속피의자등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수형인등 DNA DB가 재범자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은 총 172,880건에 대한 9,324건으로 5.4%이며, 구속피의자등 DNA DB가 재범자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은 12.5%이다. 전체 범죄자 DNA DB가 재범자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은 약 7.4%이다.

이는 자신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범죄자 DNA DB에 수록되어 있는 범죄자 중에서 7.4%가 여죄가 있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그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자

4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앞의 운영보고서, 11면 및 12면.

45) 구속피의자등 DNA DB의 수록건수는 불구속재판에 따라 구속피의자의 수가 줄거나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속피의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므로 감소하는 반면, 수형인등 DNA DB의 수록건수는 『디엔에이법』시행 이전 유죄판결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은 구속피의자나 불구속피의자도 포함하므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DNA DB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활용도는 그만큼 더 커진다. 그에 반하여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범죄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불필요하게 DNA DB에 수록한 셈이 된다. 7.4%라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 DNA DB의 수록건수가 인구대비 0.4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46] 결코 낮다고는 볼 수 없으나 다른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프랑스 4%보다는 높으나 영국 40%, 독일 16%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47]

### (4) 여죄확인

여죄확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형인등 DNA DB에서 범죄현장 등 DNA DB를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와 구속피의자 등 DNA DB에서 범죄현장 등 DNA DB를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로 나누어 그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 4〉 수형인 등 DNA DB와 범죄현장 등 DNA DB 일치 현황[48]

| 연도 | 수형인등 DNA DB → 범죄현장등 DNA DB | | |
|---|---|---|---|
| | 검색요청 | 일치 | |
| | | 일치(명) | 일치(건) |
| 2010~2011 | 32,964 | 4,632 | 7,522 |
| 2012 | 18,068 | 1,172 | 1,806 |
| 2013 | 19,053 | 1,032 | 1,385 |
| 2014 | 19,219 | 641 | 781 |
| 2015 | 16,279 | 444 | 520 |
| 2016 | 20,901 | 668 | 783 |
| 2017 | 21,531 | 649 | 717 |
| 2018 | 20,597 | 667 | 782 |
| 2019 | 17,898 | 669 | 767 |
| 재검색 | 620,493 | 1,456 | 1,723 |
| **합계** | **807,003** | **12,030** | **16,786** |

46) 전체 인구수(51,400,000명) 대비 범죄자 DNA DB에 수록된 자(239,377명)에 대한 비율이다. 참고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범죄자 DNA DB 수록건수는 인구대비 3.8%, 독일 1%, 영국 8.9%로 우리나라보다 DNA DB의 규모가 훨씬 크다.

47) 김택수, 주39의 논문, 108면.

4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앞의 운영보고서, 20면.

<표 4>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수형인 등 DNA DB에서 범죄현장등 DNA DB를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는 2010~2011년 7,522건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00여 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2011년에 일치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은 『디엔에이법』시행 이전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한 결과로 보인다.

〈표 5〉 구속피의자 등 DNA DB와 범죄현장 등 DNA DB 일치 현황[49]

| 연도 | 구속피의자등 DNA DB → 범죄현장등 DNA DB | | |
|---|---|---|---|
| | 검색요청 | 일치 | |
| | | 일치(명) | 일치(건) |
| 2010~2011 | 18,610 | 2,101 | 3,195 |
| 2012 | 9,834 | 1,416 | 2,076 |
| 2013 | 8,540 | 1,405 | 2,127 |
| 2014 | 7,806 | 1,064 | 1,422 |
| 2015 | 7,659 | 823 | 1,157 |
| 2016 | 6,938 | 690 | 994 |
| 2017 | 5,884 | 518 | 640 |
| 2018 | 4,984 | 559 | 767 |
| 2019 | 4,904 | 504 | 750 |
| 재검색 | 0 | 0 | 0 |
| **합계** | 75,159 | 9,080 | 13,128 |

<표 5>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구속피의자 등 DNA DB에서 범죄현장 등 DNA DB를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 또한 2010~2011년 3,195건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750건으로까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과 <표 5>에서 나타나듯이, 범죄자 DNA DB에서 범죄현장 등 DNA DB에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통상적으로 범죄현장 등 DNA DB를 검색하여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범죄현장 등 DNA DB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신원확인의 비율이 높아지면 미제사건의 건수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여죄확인 건수도 감소하기 마련이다.[50] 그런 의미라면

4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앞의 운영보고서, 21면.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현장 등 DNA DB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건수가 오랫동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51] 범죄자 DNA DB에서 범죄현장 등 DNA DB에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가 이처럼 점차 감소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는 여죄확인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여죄확인 건수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미제사건의 누적 건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52]

## 3. 국민의 권익 보호의 목적 달성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53] 국민의 권익 보호의 목적이란 한편으로는 강력범죄로부터 일반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속피의자등 및 수형자등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할 과제를 의미한다. 전자는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데, 그러한 목적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해 보았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후자, 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 결정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의 결과물이 다수 축적되어있는 상황이므로, 여기서는 주된 쟁점에 국한하여 다루어 보도록 한다.

### (1) 수집규정

####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의 정당성 여부

『디엔에이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방법원판사

50) 김택수, 주39의 논문, 99면.

51) 앞의 <표 1> 참조.

52) 실제로 범죄현장 등 DNA DB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일정한 수준(평균 9,705건)을 유지하다가 2017년 11,668건, 2018년 11,032건, 2019년 12,549건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53) Ⅲ.1.(3). 참조.

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특정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등과 수형자등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그런데 당해 범죄사건도 아닌 장래의 범죄수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보를 조달할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무죄추정 및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정하는 입장(소수설)과 긍정하는 입장(다수설 및 대법원[54])이 대립하는데, 긍정하는 입장은 다시 구속피의자등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및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수형자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55]와 구속피의자등뿐만 아니라 수형자등의 경우에도 무죄추정 및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56]로 나누어진다.

부정하는 입장은 디엔에이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재판이나 형의 집행이 아니라 향후 재범가능성에 대비한 협조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점,[57]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 자체는 피의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종래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도 허용되고 있다는 점,[5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이 아니라 오히려 통상적인 인식업무조치에 해당한다는 점[59]을 근거로 내세운다. 이에 반하여 긍정하는 입장은 구속피의자등이 당해 범죄사건에서 특정범죄로 구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다면 당해 범죄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나, 아직 범해지지 아니한 장래의 범죄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된 불이익을 부과한 것이나 다를 바 없고, 이는 특정한 범죄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5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법원 검토의견: 이한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09/11), 14면에서 재인용.

5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주18, 14면; 윤영철, 주12의 논문, 399면; 김혜경, 주1의 논문, 253면; 하태영, DNA 관리법과 DNA 감정, 동아법학(제48호), (2010), 303면; 김슬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주의, 사법(제50호), 사법발전재단, (2019), 21면.

56) 조성용,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제21권 제3호), (2010/가을호), 238면 이하; 이호중, 주13의 논문, 243면 이하; 조성훈, 주18의 논문, 200면.

57) 2011헌마32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 의견서, 2011/10, 95면 및 96면.

5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검토의견: 이한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09/11), 14면에서 재인용.

59) 이성기/한면수, 주15의 논문, 8면 이하 및 10면.

범죄혐의를 근거로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여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을 부과해야 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60]

이하에서는 각 입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부정하는 입장의 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법적 성격을 단순히 협조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해하거나(일종의 임의수사), 경찰법상의 인식업무조치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당해 범죄사건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보를 조달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피의자등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경찰법상의 지문수집 및 보관, 검색 및 대조와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6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미래의 형사소추에 대비한 사전적 정보조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일종의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는 임의수사나 경찰법상의 인식업무조치와는 달리, 피의자등의 신체적 자유 및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으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제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피의자등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및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수형자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거기에 의하면 수형자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는 물론이고, 유죄가 확정된 이후의 단계에서는 구속피의자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또한 별다른 문제없이 허용된다. 그러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해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62]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을 당해 범죄사건을 넘어선 광범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구속피의자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반대한다면, 그러한 논증은 수형자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63] 『디엔에이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과거에 발생한 미해결 사건이나 미래에 발생할 범죄사건이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

60) 서계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제16권 제2호), (2010), 219면 이하; 조성용, 주56의 논문, 237면; 이호중, 주13의 논문, 242면; 신양균, 주1의 논문, 71면; 김혜정, 주1의 논문, 253면.

61) Ⅲ.1.(2). 참조.

62) 헌법재판소 1990.11.19. 선고 90헌가48 결정.

63) 조성훈, 주18의 논문, 200면.

칙이 적용된다면, 구속피의자등과 수형자등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요컨대 장래의 범죄수사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구속피의자등인지 또는 수형자등인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무죄추정 및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형자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는 재사회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64] 왜냐하면 『디엔에이법』 제5조 제1항은 수형자등이 특정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것만으로 수형자등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형집행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이중처벌의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65]

### 2)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의 필요성 여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이와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식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식 모델이다.

우선 미국식 모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Maryland v. King 판결[66]을 선고하기 전까지 12개의 연방항소법원이 디엔에이신원확인 관련 연방 법률 또는 주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였다. 제1, 3, 4, 5, 8, 9, 11 및 12 연방항소법원은 이익형량 분석을 적용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고, 제2, 7, 10 연방항소법원은 특별한 필요 분석을 적용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나머지 제6 연방항소법원은 특별히 하나의 방법론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Maryland v King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이익형량 분석을 적용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반면, 소수의견은 압수수색이

64) Krehl/Kolz, 주21의 논문, 452면.

65) 신동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대안, 형사정책(제24권), (2012), 28면; 서계원, 주60의 논문, 215면 이하.

66) Maryland v. King, 133 S.Ct. 1958 (2013). 위 사건의 피고인은 산탄총으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체포, 구금되었는데, 동인에 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인한 결과 미해결된 과거 강간 사건의 가해자임이 확인되어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 주 항소법원이 중죄에 대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메릴랜드 주 법률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자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사하게 된 것이다. 자세히는 조성훈, 주18의 논문, 184면. 주84.

구체적, 개별적 혐의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하면 체포, 압수·수색이 적법하려면 '합리적'이어야 하며, 영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익형량 분석이란 법원이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는 당해 압수·수색이 개별적, 구체적 혐의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선호하지만 모든 압수·수색에 대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압수·수색의 대상자에게 제한된 사생활이 기대되는 경우(예컨대 구속피의자, 수형자, 가석방된 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는 압수·수색을 허용했을 때 발생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Maryland v. King 판결의 다수의견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통하여 얻는 공익이 중대한 점, 이미 중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혐의가 인정되어 적법한 구금상태에 있는 만큼 제한된 사생활이 기대된다는 점, 침해되는 사익이 극히 경미한 점,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중립적 기준에 의해 실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 혐의 및 영장이 없는 압수·수색이라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67]

이에 반해 특별한 필요 분석이란 압수·수색의 대상자에게 제한된 사생활이 기대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에게 높은 재범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춘다는 특별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2 연방항소법원은 Roe v. Marcotte 판결[68]에서 이러한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 구체적 혐의 및 영장이 없는 압수·수색이라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69]

그 다음으로 독일식 모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입법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지니는 이론적 약점, 다시 말해 피의자등 및 수형자등에 대하여 장래의 범죄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약점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최소화하려고 시도하였다.

67) 조성훈, 앞의 논문, 186면.

68) 성범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을 강제하는 코네티컷주 법률의 합헌성을 다룬 사건이다. 자세히는 조성훈, 앞의 논문, 182면.

69) 조성훈, 앞의 논문, 183면.

즉, 미래의 형사소송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피의자등 및 수형자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하려면, 현저한 의미의 범죄를 범하였다는 (초기)혐의를 받고 있거나 현저한 의미의 범죄로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피의자등 및 수형자등이 차후에 다시 현저한 의미의 범죄를 범할 것이라는 전제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70] 물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을 마련한다고 해서 (아직 범해지지 아니한) 장래의 범죄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혐의가 인정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렇게 함으로써 피의자등 및 수형자등에 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은 '특별한 사안'으로 제한된다.[71] 게다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의자등과 수형자등의 이익은 재범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지니는 이론적 약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이익형량 분석 또는 일부 연방항소법원이 취하고 있는 특별한 필요 분석 내지 독일 형사소송법에 마련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에 의하여 커버될 수 있다. 우선 이러한 대안 중에서 특별한 필요 분석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은 그 취지에 있어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이 이익형량 분석보다 『디엔에이법』 해석상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익형량 분석을 적용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어 법관의 영장 없이도 피의자등 및 수형인등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한된 사생활이 기대되는 자를 우리(일반인)의 적으로 간주하고 달리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에 반해 일각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의 도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판사가 채취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서 채취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하면서 실무상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하거나,[72] 다른 한편으로 재범의 위험성 요건을 신설하더라

70) 독일 형사소송법 제81g조 제1항 및 제4항 참조.

71) 조성용, 주56의 논문, 240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현저한 범죄 및 사실에 근거한 재범의 위험성의 예측이라는 실체적 요건과 법관의 영장심사라는 형식적 요건이 법률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좁은 의미에서 비례관계에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수형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수록을 규정한 구신원확인법 제2조 및 형사소송법 제81g조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BVerGE 103, 34(2000.12.14. 헌재결정).

도 피의자등과 수형인등에 대한 낙인효과는 증대할 것이며,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가 져야 할 장래의 범죄에 대한 유죄의 입증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위헌적 요소는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73]

첫 번째 반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반론이 가능하다. 우선 현실적으로 판사가 채취영장을 발부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디엔에이법』 제8조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영장 발부의 실체적인 요건(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74] 게다가 지난 10년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발부율이 무려 96.7%[75]에 이른다는 점만 보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명문규정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는지 보여준다고 하겠다.

두 번째 반론은 개별적, 구체적 혐의를 요구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발생한 미제사건 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칭찬받을만한 일이지만 개별적, 구체적 혐의 없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확실히 미래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 강화된 감시체계를 형성하는 모든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감시국가화의 가능성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76] 그럼에도 『디엔에이법』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법률적 과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능하게 된 새로운 형태의 정보수집행위를 허용할 것인지 결단하고, 만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보호장치(safeguard)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앞서 소개했던 미국식 모델과 독일식 모델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

---

72) 헌법재판소 2011헌마28 결정 다수의견; 김혜경, 주1의 논문, 256면; 이성기/한면수, 주15의 논문, 15면.

73) 이호중, 주13의 논문, 244면 이하.

74) 이호중, 주13의 논문, 246면; 김슬기, 주55의 논문, 19면.

75)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청구는 총 1,953건이었고, 채취영장 발부는 총 1,888건이었으며, 기각(일부 기각 포함)은 총 65건이었다. 자세히는 사법연감, 대법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청구 및 처리내력, 법원통계월보, (2018).

76) 김슬기, 앞의 논문, 18면 이하.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개별적, 구체적 혐의를 요구하는 원칙만 고수한다면, 그동안 실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활용해 왔던, 특정인의 지문정보[77] 또는 신상정보[78]를 미래의 범죄수사 목적으로 보관, 전산화, 검색 및 대조하는 행위등도 모두 위헌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79] 사실 이러한 행위등은 미래의 범죄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혐의가 없다는 점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제 그것을 모두 위헌으로 금지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과도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그 목적과 범위 및 한계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80]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은 이러한 작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3) 특정범죄군의 적정성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81] 『디엔에이법』이 개정될 때 기존의 11가지 유형에 7가지의 범죄유형이 추가되었다. 동법 개정 전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형법상의 범죄 유형들이 이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매개체 없이 직접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82] 그러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특정범죄의 적정성 여부는 법적 평화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높은 불법내용을 지닌 범죄인지(중대성), 통계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지(재범성), 개인을 식별하는데 적합한 시료를 남길 개연성이 있는 범죄인지(적합성)에 따라 결정된다.[83]

---

77) 예컨대 경찰청장이 일반인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미래의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나 피의자등에 대한 지문정보를 수사기관이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미래의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78) 예컨대 피의자등의 개인정보, 범죄경력, 재판기록 등을 수사기관이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미래의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79) 신동일, 주65의 논문, 13면.

80) 김봉수, 범죄수사상 생체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규범적 통제, 법학논총(제35권 제2호), 전남대 법학연구소, (2015), 268면.

81) Ⅱ.2. 참조.

82) 이성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형사상 활용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국헌법연구(제27권 제2호), (2016), 216면.

그동안 문헌에서는 『디엔에이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군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글에는 그러한 논의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대신, 『디엔에이법』 시행 이후 10년간 범죄유형별 시료 채취 현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 현황, 검색 일치율 현황 및 수사 재개 현황을 분석하여 특정범죄군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보도록 한다.

〈표 6〉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시료 채취 현황(2010년~2019년)[84]

| 구분 | 합계 | 방화 실화 | 살인 | 약취 유인 | 강간 추행 | 절도 강도 | 폭력 행위 | 특가법 | 성폭력 | 마약류 | 아청법 | 군형법 |
|---|---|---|---|---|---|---|---|---|---|---|---|---|
| 수형인등 | 184,908 | 2,537 | 4,773 | 323 | 31,124 | 24,670 | 75,222 | 8,213 | 14,774 | 14,888 | 8,384 | 0 |
| 구속피의자등 | 71,363 | 1,795 | 5,822 | 281 | 5,741 | 19,272 | 12,272 | 6,189 | 8,189 | 7,782 | 3,179 | 0 |
| **합계** | **256,271** | **4,332** | **10,595** | **604** | **36,865** | **44,228** | **87,494** | **14,402** | **23,518** | **22,670** | **11,563** | **0** |

<표 6>에서 보듯이, 강간, 추행, 강도, 절도, 폭력행위의 유형의 채취 건수가 전체의 66%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폭력행위가 87,4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및 강도가 44,228명, 강간 및 추행이 36,865명, 성폭력 관련 사건 23,518명 순으로 채취되었다.

〈표 7〉 범죄유형별 범죄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 현황(2010년~2019년)[85]

| 구분 | 합계 | 방화 실화 | 살인 | 약취 유인 | 강간 추행 | 절도 강도 | 폭력 행위 | 특가법 | 성폭력 | 마약류 | 아청법 | 군형법 |
|---|---|---|---|---|---|---|---|---|---|---|---|---|
| 수형인등 | 180,136 | 2,500 | 3,569 | 318 | 30,539 | 24,438 | 74,897 | 8,253 | 13,827 | 13,550 | 8,245 | 0 |
| 구속피의자등 | 66,497 | 1,620 | 5,447 | 259 | 5,043 | 17,307 | 11,165 | 5,070 | 8,374 | 9,128 | 3,084 | 0 |
| **합계** | **246,633** | **4,120** | **9,016** | **577** | **35,582** | **41,745** | **86,062** | **13,323** | **22,201** | **22,678** | **11,329** | **0** |

83) 조성용, 주56의 논문, 231면.

8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주40의 운영보고서, 9면.

8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앞의 운영보고서, 13면.

<표 7>에서 보듯이, 폭력행위가 86,0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및 강도가 41,745명, 강간 및 추행이 35,582명, 마약류가 22,678명, 성폭력 관련사건 22,201명 순으로 수록되었다. 폭력행위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해당 죄에 대한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간접정범이 포함되어 있다.

〈표 8〉 범죄유형별 검색 일치율 현황(2010년~2019년)[86]

| 범죄 유형 | 방화 실화 | 살인 | 약취 유인 | 강간 추행 | 절도 | 강도 | 폭력 행위 | 특가법 | 성폭력 | 마약류 | 아청법 | 기타 |
|---|---|---|---|---|---|---|---|---|---|---|---|---|
| 일치율 | 6.7% | 30% | 0.4% | 23.3% | 21.1% | 27.9% | 11.6% | 20.9% | 26.2% | 65.3% | 19.9% | 5.5% |

<표 8>에서 보듯이, 범죄현장등 DNA DB에 수록된 증거물의 경우, 이를 사건 유형별로 분류하였을 때 마약류 사건의 수록 건수 대비 일치율이 6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 30%, 강도 27.9%, 성폭력 관련 사건 26.2%, 강간 및 추행 23.3%, 순으로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표 9〉 범죄유형별 수사 재개 현황(2010년~2019년)[87]

| 범죄 유형 | 방화 | 살인 | 성폭력 | 절도 | 강도 | 폭력 | 특가법 | 마약류 | 기타 |
|---|---|---|---|---|---|---|---|---|---|
| 수사 재개 건수 | 38 | 37 | 976 | 3,895 | 256 | 121 | 10 | 140 | 516 |

<표 9>에서 보듯이, DNA DB를 활용하여 해결한 미제사건의 사건 유형별 현황에서 절도가 3,895건으로 가장 높고, 성폭력 범죄 976건, 강도 256건 순으로 많았다. 기타에는 재물손괴, 교통사고 및 주거침입 등이 포함된다.

위와 같은 통계 결과를 토대로 특정범죄군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8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앞의 운영보고서, 21면.
8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앞의 운영보고서, 23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범죄유형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수록 현황을 보면 이른바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범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살인, 강도, 강간, 추행, 폭력행위, 방화 및 마약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넓은 의미의 성범죄로 분류되는 강간, 추행, 성폭력 및 아청법상의 성범죄가 전체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점은 『디엔에이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약취유인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서는 강력범죄로 취급할 수 없는 경미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재범률이 높다고 할 수도 없어서 특정범죄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88] 실제로 이러한 범죄들의 채취 및 수록 건수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약취유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율과 DNA DB 수록률은 각각 0.24%, 0.23%에 불과하였다.

둘째, 절도죄는 통상적으로 강력범죄로 분류되지 않는데도 채취율과 DNA DB 수록률은 물론이고 검색 일치율 및 수사 재개 비율 또한 높다는 점이다. 이는 절도죄는 단순절도 이외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와 같이 행위상황이나 행위양태로 인하여 불법성이 가중되는 경우와 상습절도와 누범가중과 같이 상습성 및 반복성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DNA DB 수록률과 검색 일치율을 비교하면 해당 범죄유형의 발생률과 재범률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마약류의 경우 DNA DB 수록률이 9.2%(전체 4위)이고 검색 일치율은 65.4%로서, 재범률이 전체 범죄유형 중 가장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그에 반해 폭력행위의 경우는 DNA DB 수록률은 34.9%(전체 1위)이나 검색 일치율은 11.6%로서, 재범률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 살인의 경우는 DNA DB 수록률이 3.7%(전체 8위)이고 검색 일치율은 30%로서,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마찬가지로 절도 및 강도의 경우도 DNA DB 수록률이 17%(전체 2위)이고 검색 일치율은 절도 21.1%, 강도 27.9%로서,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넓은 의미의 성범죄의 재범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리하여 강간 및 추행의 경우 DNA DB 수록률은 14.4%, 검색 일치율은 23.3%이고, 성폭력의 경우 DNA DB 수록률은 9%, 검색 일치율은 26.2%, 아청법상의 성범죄의 경우 DNA DB 수록률은 4.6%, 검색 일치율은 19.9%이다.

88) 조성용, 주56의 논문, 234면; 서계원, 주60의 논문, 228면; 신양균, 주1의 논문, 76면; 윤영철, 주12의 논문, 398면.

넷째, DNA DB 검색 일치 후 수사 재개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절도, 성폭력, 강도, 마약류, 폭력범죄 순이라는 점이다. 수사 재개 비율은 DNA DB 검색 일치 후 실제로 수사를 개시한 비율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피의자등과 수형자등을 범인으로 검거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각종 언론과 매스컴에서 DNA 검사로 연쇄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실상 살인의 경우 수사 재개 비율은 전체의 0.6%에 불과하였다.

### (2) 검색·회보규정

수집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디엔에이법』제7조 및 제9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동법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상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는 특정인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만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인을 찾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을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89] 무작위 검색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90] 및 수집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수집된 것인 한, 별도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91]이 대립한다.

첫째로 별도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은 검색을 사실조회라고 하면서도 과잉 수사를 막기 위해 강제수사로서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나,[92] 현행법이 대상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유전정보가 무작위 검색되는 수많은 정보주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열람권을 좌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는[93] 논거를 내세운다. 그러나 우선 첫 번째 논거는 논리가 일관되지

89) 박용철,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 채취의 제문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출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제18권 제2호), (2006), 21면; 유영찬/장영민, 경찰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전자은행의 설립과 활용을 중심으로, 치안논총(제14집), 치안정책연구소, (1998), 513면; 김혜경, 주11의 논문, 32면.

90) 이호중, 주13의 논문, 249면; 이상용, 주14의 논문, 149면.

91) 조성용, 주56의 논문, 250면.

92) 유영찬/장영민, 앞의 보고서, 513면.

93) 김혜경, 주11의 논문, 32면 이하.

못하다. 왜냐하면 검색을 한편으로는 사실조회라는 임의수사로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제수사로서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9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검색, 대조 및 회보 포함)은 일종의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두 번째 논거는 '조건적으로만' 타당하다. 즉, 『디엔에이법』이 현재처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을 위한 영장(이른바 감정처분허가장) 또한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주장은 타당할 것이다. 반면에 『디엔에이법』이 위와 같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 수집요건을 모두 요구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합법적으로 수집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검색, 대조 및 회보는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별도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및 디엔에이감식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이미 예상된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된다.[95] 그럼에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을 위하여 별도의 영장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낭비만 초래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 그에 반하여 만일 이와 같은 조치가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이는 관련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왜냐하면 수집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정보가 저장 또는 전달(검색, 대조 및 회보)된다면 관련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신의 정보가 저장 또는 전달되는 경우에 비해 정보에 대한 포착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96] 목적의 이탈은 별도의 사법적 통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디엔에이법』 제11조 제1항은 미래의 범죄수사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색 및 회보의 목적과 수집목적은 일치한다. 그리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을 위한 별도의 영

94) Ⅲ.1.(2). 참조.

95) 영장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무작위 검색은 과잉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범죄혐의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우려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할 때 재범의 위험성 예측이라는 실체적 요건과 법관의 영장심사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96) 조성용, 주13의 논문, 1024면.

장은 필요 없다.

둘째로 무작위 검색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의 논거는 한마디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 및 대조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및 개별적, 구체적 혐의를 요구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검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97]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9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애당초 개별적, 구체적 범죄혐의의 흠결로 인하여 무죄추정 및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자세히 검토해 보았듯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을 신설하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대조는 수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때는 수집의 경우와는 달리 - 검색 및 회보가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 검색 및 대조를 위한 영장은 필요 없다.

### (3) 삭제규정

『디엔에이법』 제13조 제3항은 구속피의자등 또는 수형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직권 또는 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구속피의자등이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예컨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무죄, 면소 등)에 해당하여 석방되지 않는 한, 그리고 수형자등이 재심에서 무죄 등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지 않는 한, 그들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사망하기 전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는 셈이다.

〈표 10〉 범죄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현황(2010년~2019년)[99]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계 |
|---|---|---|---|---|---|---|---|---|---|---|---|
| 수형인등 | 0 | 0 | 0 | 0 | 0 | 5 | 1,393 | 1,976 | 1,452 | 1,416 | 6,242 |
| 피의자등 | 54 | 200 | 911 | 564 | 757 | 602 | 676 | 605 | 1,972 | 907 | 7,248 |

97) 이호중, 주13의 논문, 249면; 이상용, 주14의 논문, 149면.

98) Ⅲ.3.(1).1). 참조.

9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주40의 운영보고서, 16면.

<표 10>에서 보듯이, 동법 시행 이후 10년간 수형자등은 사망 등의 사유로 총 6,242명이 삭제되었고, 구속피의자등의 경우 총 7,248명이 죄명변경, 혐의없음, 사망 등의 사유로 삭제되었다. DNA DB에 수록된 수형자등의 수는 172,88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형자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율은 3.6%이다. 그리하여 수형자등 중 96.4%에 해당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다른 한편 DNA DB에 수록된 구속피의자등의 수는 66,49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율은 10.9%이다. 그리하여 구속피의자등 중 89.1%에 해당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이와 같이 전체 범죄자 중 94.4%에 해당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그들의 사망시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것이 범죄자의 정보적 자기결정권 보호, 과잉금지의 원칙 및 재사회화 요청에 위배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고, 선행연구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크게 위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100]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입장[101]이 대립한다.

우선 위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중립성·최소성·이용주체제한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오·남용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디엔에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삭제와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102]을 두고 있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형자 등이 사망할 때까지 보관하더라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이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의 목적 이외에 인종이나 성별, 가족관계 등을 판별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 실제로 범죄자의 52%가 6년

100) 헌법재판소 2011헌마28 결정 다수의견; 헌법재판소 2016헌마344 결정 다수의견; 이성기/한면수, 주15의 논문, 135면.

101) 헌법재판소 2011헌마28 결정 소수의견; 조성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마28)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제446호), (2014/12), 107면 이하; 이호중, 주13의 논문, 257면; 김혜경, 주11의 논문, 33면; 신양균, 주1의 논문, 80면; 윤영철, 주12의 논문, 394면.

10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후 감식시료 및 디엔에이 즉시 폐기(동법 제12조 제1항), 무죄 등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동법 제13조 제1항), 디엔에이인적관리자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분리(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운용을 위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설치(동법 시행령 제14조), 의무위반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 대한 형사처벌(동법 제15조,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등.

이내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15년이 지나면 재범의 위험성에 있어서 범죄전력이 없는 자와 같아진다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103] 특히 소년범의 경우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대상범죄 중에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등록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장기간 정보 보관으로 인한 유출, 오용 및 오염의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대상범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보관기간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위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의 논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의 그것에 비해 설득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우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중립성·최소성·이용주체제한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는 있으나, 여전히 그 정보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인종이나 성별, 가족관계 등을 판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향후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104] 또한 일련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오남용의 위험이 최소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장기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105] 나아가 범죄의 경중, 기간의 경과, 재사회화 가능성 등에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형자등은 언제든지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들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 시까지 보관하는 삭제규정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그런 획일적인 방법 말고도 수형자등의 정보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형자등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그들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 시까지 보관하는 것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형집행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103) Home Office, Keeping the Right People on the DNA Datbase: Science and Publich Protection, PP 4.8-4.9, 2009, 이성기/한면수, 앞의 논문, 134면, 주60 재인용.

104) 헌법재판소 2011헌마28 결정 소수의견.

105) 조성용, 주101의 논문, 108면.

## Ⅳ. 『디엔에이법』에 대한 입법론 제언 - 결론에 갈음하여 -

『디엔에이법』 시행 후 10년이 지난 지금, 동법이 추구하는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목적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유의미할 정도로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우선 통상적으로 사건해결능력과 범죄수사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평가기준으로 범죄현장등 DNA DB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건수에 대비하여 범죄현장등 DNA DB에서 범죄자 DNA DB를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의 비율을 사용하는데, 이 비율이 약 13.8%였다. 이는 DNA DB 운영을 통해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약 13.8%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DNA DB가 실제로 범죄수사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으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수치는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은 인구대비 수록건수가 1~8.9% 수준이며 일치율도 35~58% 사이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수록건수가 0.24%에 불과하며 일치율도 13.8%로 낮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자 DNA DB가 재범자를 정확하게 포함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평가기준으로 범죄자 DNA DB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건수에 대비하여 범죄현장등 DNA DB에서 범죄자 DNA DB를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의 비율을 사용하는데, 이 비율이 약 7.4%였다. 이는 자신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범죄자 DNA DB에 수록되어 있는 범죄자 중에서 7.4%가 여죄가 있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7.4%라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 DNA DB의 수록건수가 인구대비 0.4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다고는 볼 수 없으나 다른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프랑스 4%보다는 높으나 영국 40%, 독일 16%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DNA DB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여죄확인의 효과인데, 이는 범죄자 DNA DB에서 범죄현장등 DNA DB를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로 평가된다. 지난 10년간 범죄자 DNA DB에서 범죄현장등 DNA DB에 대조하여 일치한 건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죄확인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여죄확인 건수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미제사건의 누적 건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 『디엔에이법』이 추구하는 국민의 권익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의 실체적 전제조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는 장래의 범죄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범죄혐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무죄추정 및 영장주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사회화 요청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약점을 보완해 줄 보호장치(safeguard)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이다. 입법론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28 결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은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행위유형, 행위양태, 행위자의 인격 및 그 밖의 인식 등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다른 하나는 구속피의자등 또는 수형자등이 사망한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디엔에이법』 제13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의 목적 이외에 인종이나 성별, 가족관계 등을 판별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 실제로 범죄자의 52%가 6년 이내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15년이 지나면 재범의 위험성에 있어서 범죄전력이 없는 자와 같아진다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등록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장기간 정보 보관으로 인한 유출, 오용 및 오염의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대상범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보관기간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점, 재사회화 요청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 대안으로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관련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28 등)에 대한 의견제출, 2011.7.

김봉수, 범죄수사상 생체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규범적 통제, 법학논총(제35권 제2호), 전남대 법학연구소, (2015).

김슬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주의, 사법(제50호), 사법발전재단, (2019).

김택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성 강화를 위한 법정책, 비교형사법학회(제17권 제3호), (2015).

김혜경, 유전자정보수집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형사법연구(제22권 제3호), (2010).

김혜경,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형사정책연구(제25권 제2호), (2014/여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보고서, (2020/6).

문성도, 수사상 지문 채취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제13권 제4호), (2002).

박동균/황영구,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제10권 제2호), (2008).

박병옥/황문규, 위험예방을 위한 경찰법과 범죄진압을 위한 형사법의 목적·수단상 몇 가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제23권 제3호), (2012/가을호).

박용철,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 채취의 제문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출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제18권 제2호), (2006).

사법연감, 대법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청구 및 처리내력, 법원통계월보, (2018).

서계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제16권 제2호), (2010).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결과 보고서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19).

신동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대안, 형사정책(제24권), (2012).

신양균, 유전자정보은행제도와 인권, 형사법연구(제22권 제3호), (2010).

유영찬/장영민, 경찰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전자은행의 설립과 활용을 중심으로, 치안논총(제14집), 치안정책연구소, (1998).

윤영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제12권 제1호), (2011).

이상용, 범죄수사목적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제15권 제3호), (2004/가을호).

이성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형사상 활용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국헌법연구(제27권 제2호), (2016).

이성기/한면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법과 정책연구(제12집 제1호), (2012).

이승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이론과 국제 현황,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18호), (2009/2).

이호중,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 민주법학(제51호), (2013).

조성용,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법학(제49호), (2007).

조성용,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제21권 제3호), (2010/가을호).

조성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마28)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제446호), (2014/12).

조성훈, DNA신원확인정보와 영장주의, 정보법학(제17권 제2호), (2013).

최민영, 영국의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규제정책의 변화와 그 시사점, 형사정책(제25권 제2호), (2013).

하태영, DNA 관리법과 DNA 감정, 동아법학(제48호), (2010).

## 〈외국문헌〉

Krehl/Kolz, Genetischer Fingerabdruck und Verfassung, StV 2004.

Schwan, Die Abgrenzung des Anwendungsbereichs der Regeln des Straf- und Ordnungswidrigkeitenverfolgungsrechts von dem des Rechts der Gefahrenabwehr, VerArch 70, (1979).

Volk, Gesetz zur Ä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 - Anspruch und Wirklichkeit, NStZ 1999.

Wolter,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rafprozeßordnung und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vor §151. Rn. 153, in: SK-StPO, München, (2005).

# Rechtliche Bewertung des DNA-Identitätsfeststellungsgesetzes(DNA-IFG) im Zeitraum vom 26.7.2010(in Kraft getreten) bis 2020 Jahre

Cho, Sung-Yong*

Der Schwerpunkt der vorliegenden Arbeit soll auf die Erörterung der materiellen und verfahrensrechtlichen Fragestellungen gelegt werden, die sich im Zusammenhang mit der auf Grundlagen von den Vorschriften des DNA-IFG zulässigen DNA Identitätsfeststellung stellen. Nach der Meinung des Verfassers sind die Vorschriften des DNA-IFG insgesamt dem Gebiet des Strafverfahrens zuzuordnen, und Erhebung und Verarbeitung des DNA Identifizierungsmusters stellt eine strafprozessuale Zwangsmaßnahme dar, die in das Recht auf körperliche Unversehrtheit bzw.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bstbestimmung des Betroffenen eingreift.

Die vorsorgliche Beweisbeschaffung nach §5 I und §6 DNA-IFG verstößt gegen das Übermaßverbot. Sie knüpft zwar an eine vorangegangen Verurteilung des Betroffenen wegen einer Straftat von erheblichen Bedeutung an aber setzt keineswegs die auf bestimmten Tatsachen gestürtzte Prognose voraus, dass gegen ihn künftig weitere Strafverfahren wegen straftaten von erheblicher Bedeutung zu führen sein werden. Der Gesetzgeber des DNA-IFG verkennt dabei, dass Negativprognose das Herzstück der Eingriffsermächtigungen ist und gleichzeitig als eine Art Korretur die niedrige Verdachtsschwelle bei der Anlasstat kompensiert. Das Interesse des Betroffenen an effektivem Grundrechtsschutz wird auch nicht durch den Richtervorbehalt gemäß§8 I DNA-IFG berücksichtigt, der die Gerichte zur Einzelfallprüfung nicht zwingt.

* Professor, College of Law, Dankook University, Ph. D. in Law.

Es ist auch problematich, dass die Dauer der Speicherung in dem DNA Database nicht ausdrücklich geregelt ist. §13 III DNA-IFG sieht lediglich vor, dass DNA Identifizierungsmuster des Betroffenen zu löschen sind, wenn er gestorben ist. Das Rehabilitätsinteresse des Betroffenen gegenüber der Gafahr sozialer Abstempelung wird ebenfalls auch nicht durch die Regelung des §13 III DNA-IFG beachtet, da sie keineswegs an die Tilgungsfristen eines Registers anknüpft. So verstößt die Regelung des §13 III DNA-IFG inhaltlich gegen Verfassungsrecht.

❖ key words: DNA-Identifizierungsmuster, DNA Database, Wiederholungsgefahr, Unschuldsvermutung

투고일 : 2월 15일 / 심사일 : 3월 23일 / 게재확정일 : 3월 23일